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관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문제를 방지하고, 본 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 모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음. 아울러 현장에서 실제로 노인학대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 직원의 적절한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함.

제2조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복지법 제1장, 1조의 2항의 4호』

제3조 【노인학대의 유형】

유 형	내 용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손상·고통·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모욕·위협·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또는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는 행위 또는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 임	부양의무자가 부양 의무(책임)를 거부하거나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의식주 제공, 의료처치 등)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 기	의존적인 상태의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

제4조 【구체적인 노인학대 행위 및 증상】

1. 신체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 때린다, 세게 친다, 꼬집는다. - 흉기로 위협한다, 찌른다, 물건을 집어던진다. - 강하게 누르거나 붙잡는다. - 신체를 구속·감금한다. 묶는다. - 무리하게 먹인다, 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한다. - 강하게 흔든다, 난폭하게 다룬다. - 담배 등으로 화상을 입힌다.	-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 - 신체 부상(얼굴, 목, 가슴, 복부, 팔, 다리 등) -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옷이나 신체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 상처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부분의 출혈흔적 - 영양부족 또는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증세 - 이상한 체중감소 - 행동 또는 활동수준의 변화

2. 성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 관련 언어 표현 및 행위를 한다. - 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다. - 강제적으로 성행위 또는 강간하는 경우 -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져 있음 - 외부 성기부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 또는 하혈 - 성병 - 우울, 수면장애 - 사회관계의 단절 - 분노 또는 수치심

3. 정서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 노인에게 욕을 하거나 고향을 지른다. - (양로원 등의 시설에 보내겠다고) 협박한다. -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능력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을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외출시키지 않는다. - 사회생활을 방해한다. - 노인을 보지 않거나 말을 걸지 않고,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다. - 노인만 따로 식사를 하게 한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창피를 준다.	-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 질문에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이외에는 응답이 없다.

4. 경제적 학대

구체적 행위	증 상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동의 없이 수정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계약을 하거나 부동산 관련 거래를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재산을 증여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노인의 돈을 빌려준다. - 노인에게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거나 노인의 물건을 빼앗는다.	- 자신의 생활을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필요한 물건을 살 수가 없다. - 체납된 각종 고지서가 집에서 발견된다. - 은행계좌에서 현저한 또는 비적절한 거래가 발견된다. -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 노인 재산이 타인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5. 유기

구체적 행위	증 상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형태의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자녀(보호자)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겼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6. 방임

구체적 행위	증 상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 교환, 이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한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노인의 체위변경을 소홀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등 노인건강 또는 안전에 위험한 환경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하다. - 욕창, 궤양, 염증, 이(기생충) 등이 있다. - 노인에게 필요한 안경, 보청기, 의치 등이 없다.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 또는 탈수증상이 있다. - 필요한 의료혜택을 받지 않고 있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못하고 있다. - 언제나 같은(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 더럽고 찢어진 의복을 입고 있다. - 침대나 이불이 오물로 더럽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7. 자기방임

구체적 행위	증 상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 - 자신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에 대해 본인의 할 의사가 부족하거나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 또는 약복용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의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제5조 【노인학대 금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의거, 누구든지 노인학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노인학대예방활동】

종사자는 노인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시설의 역할

- ①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을 위해 전 직원과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②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한다.
- ③ 수급자가 급여제공과정에서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전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2. 시설 종사자의 역할

- ① 동료의 학대를 목격한 경우, 신속히 학대행위 사실을 알리고 신고한다.
- ②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한다.
- ③ 바람직한 노인 돌봄에 대한 방법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한다.
- ④ 전 직원은 본 지침의 학대 유형 및 구체적인 행위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급여제공과정에서 학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7조 【노인학대 사례의 발견과 신고】

1.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3.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4.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장과 그 종사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학대 행위 또는 학대 의심증상을 목격하였거나 또는 학대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담당상급자(관리책임자) 및 기관장, 해당 관계공무원,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노인학대 대응방법】

1. 조사와 사정

- ① 시설의 장, 사무국장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한다.
- ②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행위자, 학대피해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한다.
- ④ 시설장과 사무국장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과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학대행위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한다.

2. 학대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① 시설의 장은 피해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군·구에 보고 하도록 한다.
- ②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 ③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협조 및 연계, 학대행위자 치료 및 교육 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평가와 사후조치

- ① 시설의 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 ②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한다.